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제정 2020. 11. 0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, 제14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
1.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
3.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위원은 기획평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 1인 : 총장
2. 당연직 1인 : 기획평가처장
3. 교원 1인 : 과반수 교수단체가 추천한 교원 1인
4. 직원 1인 : 교섭대표 노동조합(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)이 추천한 직원 1인
5. 학생 1인 : 총학생회(또는 중앙운영위원회)가 추천한 본교 재학생 1인
6. 외부 전문가 :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총장이 위촉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인
7.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: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총장이 위촉한 1인
8. 제3호,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⑤ 심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당연직과 각 구성원 단체의 대표는 보직 및 대표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기 중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5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① 심의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심의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.

제8조(자료제공) 심의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고, 관계부서는 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심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710, 2020.11.06.)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